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호 9654 제출연월일 : 2025. 4. 8. 제 출 자 : 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공항시설법」의 개정으로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여객공항사용료를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귀속하도록 함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를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의 세입으로 추가하려는 것임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「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965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해당 법률안이 의결 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

법률 제 호

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「공항시설법」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공항계정에 귀속되는 여객공항사용료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)	제6조(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)
① 공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	①
호와 같다.	·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의2. 「공항시설법」 제32조의
	2제2항에 따라 공항계정에 귀
	속되는 여객공항사용료
2. ~ 10. (생 략)	2. ~ 10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